

인천지방법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26091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4. 11. 20.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728,387원 및 그중 12,477,557원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2024. 7. 19.까지는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2. 5.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22. 5. 16. 접수 제418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2. 5.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2. 5. 26. 접수 제856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 원고는 2019. 12. 1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액은 5,000만 원, 보증기한은 2024. 12. 17.까지로 정하였다.

○ 피고 A은 2019. 12. 18.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24. 1. 20. 분할상환 연체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24. 2. 20.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2024. 5. 22. 주식회사 C에게 위 대출금 채무 잔액 12,793,118원(=원금 12,492,000원+이자 301,1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2024. 6. 11. 기준 위 대위변제에 따른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및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가지급금 채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의 액수는 12,728,387원(=대위변제금 잔액 12,477,557원+지연손해금 50,410원+가지급금 200,420원)이고, 현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7%이다.

나.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24. 5. 16. 접수 제41881호로 2022. 5. 16.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 또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2024. 5. 26. 접수 제85679호로 2022. 5. 26.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12,728,387원 및 그중 대위변제 원금 12,477,557원에 대하여 2024.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24. 7. 19.까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연 7%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먼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부터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인 2024. 1. 2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주식회사 C이 2024. 2. 20. 원고에게 그 발생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있어서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A의 채무 초과 여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이 채무 초과 상태였음은 피고 A이 자인하고 있고,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3) 피고 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소유 부동산의 전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담보로 제공한 점, ② 피고 A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 외에도 D, E, 주식회사 F 등 다수의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B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4) 피고 B의 선의 여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38718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18. 12. 18.부터 2021. 1. 24.까지 총 131,82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그중 변제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을 제1호증(계좌거래내역)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에 대한 악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악의는 여전히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결국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훈

별지